2026.11.23.

KiRi 리포트

미국 재보험 적격관할권 평가 재개의 의미와 과제

| 이슈 분석 |

문제영 연구위원

요 약

미국 재보험 수재의 담보 요건은 국내 재보험회사의 자금 운용과 거래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정비에 이어 올해 9월 NAIC가 한국의 적격관할권 평가를 재개하며 관련 논의가 진전됨. 적격관할권 지정 후 회사별 인증을 통해 담보 요건이 완화되면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높아져 미국 수재 확대와 수익원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 정책당국은 적격관할권 평가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상호인정관할권 지정의 실익과 추가 요건을 검토하며, 보험회사는 회사별 인증·담보 조정에 대비하면서 수재 확대에 따른 위험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재보험 수재에 따른 국내 재보험회사의 담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관할권 인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올해 9월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가 한국에 대한 평가를 재개하면서 관련 논의가 진전됨

- 미국은 외국 재보험회사와의 거래에 일정한 담보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대국 감독체계가 미국의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인지를 평가하여 관할권 지위를 인정하고 담보 제공의무를 차등적으로 부여함(〈표 1〉 참조)
- 금융당국은 적격관할권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미국 측이 한국의 데이터 국내보관 요건과 국외 이전 제약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후속 절차가 보류됨
  - 한국은 적격관할권 지정을 신청한 후('20. 9.) NAIC 실무그룹의 지정 권고까지 받았으나('21. 5.), 이후 미국 재보험회사 한국지점의 해외 본사·계열사 등에 대한 정보 이전 제약이 쟁점으로 부각됨
- 이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정비되었으며, 최근 NAIC가 한국의 적격관할권 평가를 재개하며 관련 논의가 진전됨
  - 금융당국은 재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원수보험회사가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함('26. 1. 2.)[1)]
  - 이후 NAIC는 한국의 적격관할권 평가를 재개하고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공고함('26. 9. 4.)

○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관할권 인정 및 회사별 인증을 통한 재보험 담보 경감 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의 적격관할권 평가 재개가 국내 보험산업에 갖는 의미와 업계·정책당국의 대응 과제를 검토하고자 함

〈표 1〉 재보험회사 본국의 관할권 지위와 담보 제공 의무

구분	담보 제공 의무
미지정 국가	수재물건 책임준비금의 100% 상당금액을 담보로 거치
적격관할권 지정국가	개별 회사별 인증(Certification)을 거쳐 감독등급별로 0~100% 차등 적용
상호인정관할권 지정국가	담보 제공 의무 면제(0%)

자료: NAIC, 「Credit for Reinsurance Model Law」 제2·3조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1. 12.),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 미국의 관할권 인정은 적격관할권(Qualified Jurisdiction)으로 인정받은 후 추가 요건에 대한 별도 평가를 거쳐 상호인정관할권(Reciprocal Jurisdiction)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적 경로[2]를 두고 있음(〈표 2〉 참조)

- 적격관할권 인정은 상대국 재보험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여 해당 관할권 소재 재보험회사가 담보 경감을 위한 개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임
  - NAIC는 재보험업 인허가, 재무건전성 감독, 감독협력 및 법적 집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각 주(州) 보험감독당국은 회사별 인증 심사를 통해 감독등급과 최소 담보비율을 결정함
- 상호인정관할권 인정은 적격관할권 지위를 유지하면서 시장 접근의 상호성과 감독협력에 관한 추가 요건을 충족하여 규제상 담보 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후속 단계임
  - 추가 요건에는 미국 재보험회사에 대한 감독회계상 동등 대우, 현지 거점 설치 의무 미부과, 미국의 그룹감독·그룹자본 감독 인정, 감독정보 공유 및 대상 회사의 건전성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연례 확인 등이 포함됨
  - 예컨대, 버뮤다·일본·스위스는 적격관할권 지위를 기반으로 추가 요건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 1. 1.부터 상호인정관할권 지위를 인정받음

〈표 2〉 NAIC의 적격관할권 및 상호인정관할권

구분		내용
적격관할권	개요	상대국 재보험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여 적격관할권으로 인정하고, 해당 관할권 소재 회사가 별도 인증을 받으면 감독등급에 따라 담보 부담을 경감
	목적	미국 출재보험회사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적격 해외 재보험회사의 담보 부담을 완화하여 국경 간 거래를 촉진
	평가 주체	NAIC가 국가별 관할권을 평가하고, 각 주(州)별 보험감독당국이 회사별 인증과 담보 수준을 결정
	평가 내용	신청국의 재보험분야 감독시스템, 미국 보험회사에 대한 대우 등을 평가: • 재보험업 감독체계 및 면허 허가요건 • 감독협력·정보 공유 • 재무건전성 • 미국의 확정판결 및 중재판정의 적정·신속한 집행 여부 • 과거 재보험회사 제재·청산사례 등
	평가 절차	신청·자료 제출 → NAIC 평가·의견 수렴 → 국가 단위 적격관할권 인정 → 회사 단위 인증 및 담보비율 결정
상호인정 관할권		적격관할권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음 다섯 가지 추가 요건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거쳐 인정: ① 미국 재보험회사에 대한 감독회계상 동등 대우 ② 현지 거점 설치 및 유지 의무 미부과 ③ 미국의 보험그룹 감독 및 그룹자본 감독 인정 ④ 감독당국 간 정보 공유 보장 ⑤ 대상 재보험회사의 건전성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연례 확인

자료: NAIC(2021), 「Process for Evaluating Qualified and Reciprocal Jurisdictions」

○ 적격관할권 지정은 회사별 인증을 통해 담보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재보험회사의 자금 운용과 미국 수재 여건을 개선하여 사업 기반 확대와 수익원 다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음

- 적격관할권 소재 재보험회사에는 개별 인증과 감독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담보비율이 적용되며, 국내 재보험회사도 한국의 지정 이후 회사별 인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담보 경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2) 본고는 한국이 추진하는 적격관할권 기반의 인정 경로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별도 상호인정관할권 인정 경로도 존재함

- '25년 말 기준 코리안리의 보험금지급능력 신용등급은 S&P 기준 A+, AM Best 기준 A로, NAIC 신용등급 대응표상 담보비율 20%가 적용되는 Secure-3의 신용등급 요건에 부합함(〈표 3〉 참조)

• 코리안리의 해외 보험수익 비중[3]이 2025년 44%에 달하는 가운데, 담보 경감은 해외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재보험 거래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현금·채권 등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계정을 이용하는 경우 담보 경감은 자산의 인출·운용 제약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은행의 지급보증인 신용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신용한도 사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미국 출재 보험회사와의 거래 조건 개선은 신규 거래처 확보와 수재 확대를 지원하여 국가·지역·종목별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미국 수재 여건 개선은 최근 아시아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미주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인[4] 코리안리의 전략을 뒷받침함

- 다만 미국 수재 확대 과정에서 장기 배상책임과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노출이 커질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과 예상 손해율을 검증하고 위험 집중도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3〉 미국 미시간주 인증재보험회사의 감독등급별 담보비율

감독등급	적용 담보비율	대응 신용등급: S&P / AM Best
Secure-1	0%	AAA / A++
Secure-2	10%	AA+, AA, AA- / A+
Secure-3	20%	A+, A / A
Secure-4	50%	A- / A-
Secure-5	75%	BBB+, BBB, BBB- / B++, B+
Vulnerable-6	100%	BB+ 이하 / B 이하

주: 미시간주 회사별 인증 공시 기준임(유효기간 '26. 12. 31.), 실제 감독등급은 신용등급·지급이력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며, 상호인정관할권의 담보 면제는 별도임

자료: NAIC(2019), Credit for Reinsurance Model Regulation, Section 8

○ **미국의 한국 적격관할권 평가가 재개됨에 따라, 정책당국은 평가 쟁점에 대응하고 보험회사는 지정 이후 회사별 인증과 담보 조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정책당국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추가 자료 요청에 대응하고, 지정 이후 국내 보험회사가 회사별 인증을 통해 담보 경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상호인정관할권 지정의 실익과 추진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적격관할권 지정 이후의 거래 실적과 담보 경감 효과를 살펴보고, 추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재보험회사에 대한 감독회계상 동등 대우와 현지 거점 설치 의무를 점검하고, 특히 미국의 그룹감독·그룹자본 감독 인정 범위와 양해각서 등을 통한 감독정보 공유의 범위·절차 및 비밀유지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수재 추진 보험회사는 주(州)별 인증 신청을 준비하고 기존 계약의 갱신·담보 반환 조건을 토대로 거래 상대방과 담보 조정을 협의할 필요가 있음

3) 코리안리,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 6. 해외 보험수익 비중은 IFRS17·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미국·EU를 포함한 해외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함
4) 코리안리,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 15. IFRS4 수재보험료 기준 미주 지역 수재 비중은 2021년 29.4%에서 2025년 31.2%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됨